노 동 정 책 연 구
2007. 제7권 제2호 pp.159~196
ⓒ 한 국 노 동 연 구 원

연구논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실태와 활성화 방안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중심으로

윤 조 덕*
한 충 현**

산업재해예방활동에 대한 근로자의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가 1995년 7월 노동부 행정지침으로 도입되었고, 이후 1996년 12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시 제61조의 2(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신설에 의하여 법제화되었다.

본 연구는 제도 도입 11년이 지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실태 파악을 통하여 문제점과 취약점을 분석하고 활성화 방안 제안을 위하여 2006년도에 제조업, 건설업 및 운송업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 결과에 나타난 문제점과 취약점을 토대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5가지 사항으로 요약된다.

첫째, 근로자대표에 의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이 이루어지도록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대표 선출방법과 절차, 그리고 그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

둘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사용자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도 운영. 예를 들면 상급 관리자급의 명예감독관 위촉 배제.

셋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가장 큰 방해요인으로 지적된 정부(노동부)의 소극적 제도 운영 및 지원 부족에 대한 적극적 대책 마련. 예를 들면 지역협의회, 업종별협의회, 중앙협의회 구성 · 운영, 재정적 지원 등.

논문접수일 : 2007년 2월 28일, 심사의뢰일 : 3월 7일, 심사완료일 : 6월 12일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yoonjd@kli.re.kr)
**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정책협동과정(darkya@yonsei.ac.kr)

넷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주의 인식 제고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에 대한 불이익금지 규정(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 2 제2항)의 구체화 및 미이행시 처벌규정 신설. 이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명예감독관 위촉을 '가능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개정.

다섯째, 업종별 특성에 부합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모델 개발 및 응용. 예를 들면, 본사와 떨어져 있는 옥외사업장과 일용직 근로자가 많은 건설업 특성 반영 및 항상 이동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버스, 택시, 기타 육상운송의 특성을 반영한 운송업 교육모델 등.

핵심용어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노동조합, 근로자대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방해요인, 활성화 방안

Ⅰ. 서 론

1. 산업재해 발생 현황

노동부 연간보고서인「산업재해현황분석 2005」에 의하면, 2005년도 한 해 동안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사업장 1,130,094개소의 피보험근로자 11,059,193명 중 산업재해로 인한 재해자 수는 85,411명이며 이 중 사망재해자 수는 2,493명이다. 사업장 규모별로 재해천인율을 살펴보면, 5인 미만 사업장(15.236)과 5~49인 사업장(10.352)의 재해천인율은 전체 평균(7.723)보다 높으며, 사망재해천인율 또한 5인 미만 사업장(0.332)과 5~49인 사업장(0.249)이 전체 평균(0.225)보다 높다[1].

이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법 제15조), 보건관리자(법 제16조) 또는 산업보건의(법 제17조)를 선임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없으며, 또한 사업장의 노·사 참여에 의한 재해예방 참여를 위한 제도인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법 제19조)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법 제61조의 2)의 설치 또는 위촉대상 사업장도 아닌 안전보건의 사각지대이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감소를 위하여 명예산업안

1) 노동부(2006),『산업재해현황분석 2005』, pp.32~33, pp.96~97.

전감독관 제도 활성화와 더불어 위촉범위를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 건의가 최근 꾸준히 제언되고 있다[2)3)]. 다시 말하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활성화를 통한 산업재해 감소가 산업안전보건의 주요 요소 중의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 현실이다.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1980년대 초반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1981) 시행된 이래 1980년대 후반 산업민주주주의 발전과 함께 1990년대에는 산업현장에서 노·사 간에 인명존중 풍토의 확산 및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강한 욕구가 노·사 간의 주요 쟁점으로 등장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노동부에서는 「제1차 산업재해예방 6개년 계획(1991~96)」을 수립하고 주요 추진사업의 첫 번째로 노·사 당사자의 자율적 재해예방활동 강화사업을 선정하였다[4)]. 이후 노동부의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 계획(1997~99), 제1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00~2004) 및 제2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05~2009)에 노·사 참여에 의한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반복되어 주요 추진 과제 중의 하나가 되었다. 이와 관련된 제도로는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가 있다[5)].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도는 그동안 여러 연구[6)7)]를 통하여 1,000인 미만 사업장에 노사협의회로 갈음할 수 있는 규정(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1항 단서조항)을 폐지하고 독립적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운영되어져야 한다는 정책 건의가 있었으며, 2006년 3월 24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시 단서조항이 폐기되고 100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2009년 9월 1일까지 단계적으로 설치하도록 법 규정이 개정[8)]되었다.

---

2) 윤조덕 · 한충현(2005a), p.60.
3) 윤조덕 · 한충현(2006a), 앞의 책, p.90.
4) 노동부(1991), 「제1차 산업재해예방 6개년 계획(1991~96)」, pp.5~17.
5) 노동부(2004), 「제2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05~2009)」, pp.68~69.
6) 윤조덕 · 한충현(2005), 「2005 동향조사 심층분석 사업장 안전보건과 근로자 참여제도」, 산업안전보건연구원, pp.74~75.
7) 김현주 외(2004), 『사업장의 노사참여적 산재예방활동 촉진방안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p.125.

산업재해예방활동에 대한 노·사의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1995년 7월 노동부 행정지침으로 시작되어 1996년 12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시 법적 근거(산안법 제61조의 2)를 마련하게 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9]는 1999년 2월 동법 개정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수행으로 인한 불이익처우 금지조항이 추가로 명시되었으며 2003년 6월 동법 시행령 개정시 위촉대상과 업무에 대한 개정이 있었으나, 1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제도 도입 초기의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으며, 활성화 및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10]. 예를 들면, 사업장내 안전보건활동에 입회 또는 참여할 수 있는 권한과 정보요청권 등을 보장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활동실적이 미흡[11],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어야 하며 전문적인 교육훈련 활성화, 활동조건의 보장 및 지역 차원의 교류 활성화 필요[12], 업종별로 필요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교육의 전문화·세분화[13] 등이다.

이와 같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의 필요성에 의하여 본 연구는 제조업, 건설업 및 운송업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실태조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

8)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부칙(2006. 9. 22) 제2항(산업안전보건법시행일에관한규정)

9) 1996년 12월 26일 제181회 임시국회 제12차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에서의 산업안전보건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노동부 장관의 제안 설명에서 개정법률안의 주요 골자 5가지 중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신설 제안 이유에 대하여 노동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넷째, 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회사무처, 제181회 임시국회 제12차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속기록, p.6)

10) 노동부의 「제2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05~2009)」에 의하면 "1995년 7월부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가 도입·운영된 이후 현재 전국적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4,000여 명이 위촉되어 있으나, 당초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하고 있다(노동부(2004), p.69).

11) 노동부(2000), 「제1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00~2004)」, p.92

12) 김현주 외(2004), 앞의 책, p.129.

13) 윤조덕·한충현(2006),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 개선방안』, p.88.

Ⅱ. 기존 연구

1. 기존 연구 요약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가 도입된 지 11년이 지났으나 이 제도의 활성화와 관련한 연구로는 실태조사에 근거한 운영현황 및 제도개선에 대한 연구(윤조덕, 1998; 윤조덕, 1999; 최수일, 2002; 윤조덕 · 한충현, 2005a; 윤조덕 · 한충현, 2006a, 2006b), 실태조사에 근거한 지역협의회 활성화 방안을 위한 연구(박태순, 1998, 박태순, 2005), 그리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활성화를 위한 주요 개선방안 연구(이영순, 2002) 등이 있으며,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안전보건 동향조사 자료를 토대로 근로자참여제도 중의 하나로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윤조덕 · 한충현, 2005b; 윤조덕 · 한충현, 2006c) 등이 있으나, 관련 연구가 그리 많지 않으며, 또한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아직까지는 활발하지 못하다(표 1 참조).

윤조덕(1998)의 연구에서는 안산지역 중소사업장 실태조사(응답 사업장 143개소)에서 사업장내 안전보건 조직체계 및 운영실태 조사의 일환으로 여러 설문 중 일부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도입(1995) 이후 시행 초기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여부와 활동을 위한 시간 보장 및 회사 지원 등에 관한 설문을 포함하였으며, 명예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58개 사업장에서 회사로부터의 지원 수준은 보통 정도로 나타났다(적극 지원 48.3%, 일부 활동에 대하여 지원 37.9%, 지원 않음 13.8%). 또한 안산 · 안양 · 수원 지역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별도의 실태조사를 행하여(응답자 212명) 위촉경위, 임무와 권한, 활동, 협조 정도, 교육 및 불이익 사례 등 제도 도입 초기의 현황을 조사하였다(표 1 참조). 분석 결과 명예감독관의 역할과 임무에 대하여 사업장 내의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적극 홍보, 명예감독관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지식과 능력 향상을 위한 주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및 안전보건 전문잡지의 정기적 배포, 그리고 명예감독관들의 경험 교환을 통한 능력배양을 위하여 지역협의회 구성, 활

동의 체계화 및 이를 위한 지원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조덕 · 한충현(2005a)의 연구에서는 노동부 장관이 위촉한 모든 업종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총 4,095명의 37.9%(1,552명)를 대상으로 사업장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과 사업장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관한 설문을 혼합하여 우편설문을 하였으며(응답자 296명), 분석 결과 사업장내 명예감독관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요약하면 명예감독관 위촉 범위를 노사협의회 설치의무사업장 기준인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명예감독관에의 협조의무 명시, 사업장 순회점검 보장, 명예감독관의 개정 · 시정 건의에 대한 사업주의 이행의무 명시, 명예감독관의 교육시간 보장, 명예감독관 중앙협의회와 지역협의회 구성 · 운영을 관계 법령에 명시 등이다. 윤조덕 · 한충현(2006a)의 연구에서는 제조업과 건설업에 종사하는 모든 명예산업안전감독관(2,767명)을 대상으로 현황 및 제도 활성화 방안을 우편설문조사를 행하였고(응답자 582명), 분석 결과 명예감독관 제도 활성화를 위한 관계 법령의 개정 · 보완 방향은 명예감독관 위촉을 '가능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개정, 업종별로 필요한 교육 내용을 전문화 · 세분화, 건설업의 경우 사업장 명예감독관들의 활동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의 대안으로 지역노동단체 임 · 직원 등을 사업장외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건설업 산재예방활동에 참여하는 방안 모색 등이다. 그리고 윤조덕 · 한충현(2006b)의 연구에서는 2005년도 실태조사 자료 중 제조업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응답자 215명)만을 대상으로 현황 및 제도 활성화 방안을 심층분석하였다.

최수일(2002)의 연구에서는 한국노총 산하 회원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응답 노동조합 293개소)를 통한 명예감독관 제도 개선방안을 제언하였으며, 이를 요약하면 노동자대표의 추천에 의한 자격있는 노동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도록 강제, 사업장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명예감독관 수 확대, 명예감독관의 작업중지권 보장과 각종 안전보건 관련 업무에 대한 입회 의무화 등 실질적인 역할범위 확대, 제조업의 경우 모든 사업장에 명예감독관 위촉 확대, 지역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 중앙협의회 결성 및 산별협의회와 분과위원회 구성 · 운영 등이다.

박태순(1998, 1999, 2005)의 연구에서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지역협의회 활

성화를 위한 전국의 지역협의회 조직 구성 및 운영 등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다. 박태순(1998)은 지역협의회 의장에게 행한 우편설문조사의 결과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지역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언하였다: 지역협의회 소집시 개별 사업장 명예감독관의 자유로운 참여보장, 지역협의회 내에서 업종별 분과를 구성 · 운영하여 유사 위험상황에 대한 명예감독관간의 정보교류, 지역협의회 의장단 전국회의를 통하여 정책개발을 위한 의견 수렴 등. 또한 박태순(1999)은 지역협의회 의장에게 행한 우편설문조사의 결과 분석을 통하여 지역협의회 활성화 방안으로 노동부 지방청별 명예감독관 의장단 협의체 제도화, 지역협의회 활동에 대한 사업비 책정 · 지원, 회의 공간 제공 등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이외에도 박태순(2005)은 명예감독관 지역협의회 활성화를 위하여 노동부의 조사연구사업, 지역협의회 불참자 관리방안, 명예감독관 중앙협의회 및 지역협의회 구성 · 운영에 대한 규정 보완 등의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을 제언하였다.

이영순(2002)의 연구에서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관계 법령 및 기존 연구문헌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주요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다. 예를 들면, 명예감독관이 임무수행 중 긍지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제도 보완, 안전관리자와의 업무중복 방지, 명예감독관으로 당해 사업장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 경험 등이 기준능력 이상인 자를 위촉, 명예감독관에게 보상과 실질적 혜택 수여 및 업무책임 명시, 유해 · 위험사업장에 위촉 의무화 및 규모가 큰 사업장에 명예감독관 수 증원 등이다.

또한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보건연구원에서 매년 행하고 있는 안전보건 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한 윤조덕 · 한충현(2005b)의 연구에서는 제조업의 사업장 안전보건과 근로자참여 제도 중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관한 사항도 함께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제조업 사업장에서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가 산재예방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보통 수준(5점 척도 평가에서 평균 3.00점)으로 분석되었다. 윤조덕 · 한충현(2006c)의 연구에서는 제조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기타 비제조업의 사업장 안전보건과 근로자참여 제도 중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관한 사항도 함께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사업장에서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가 산재예방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보통 수준을 약간 상회하고 있는 것(5점 척도 평가에서 평균 3.36점)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 수년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실태조사에 기초한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 등을 통해 정책 제언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제도의 개선은 아직까지 없으며, 또한 업종별 실태에 근거한 정책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표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관련 기존연구

저자 (연도)	연구 대상	연구 결과 또는 활성화 방안 요약
윤조덕 (1998)	- 안산지역 시화·반월공단에 위치한 중소사업장(응답사업장 149개소) - 조사시기 : 1997년 12월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58개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시간 보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노사협의회 의결에 따라서(44.8%), 노동조합의 요구에 의하여(20.7%), 활동시간 보장 안함(25.9%) 순으로 나타남. - 58개 사업장 중 회사의 적극 지원 48.3%, 일부 활동에 대하여 지원 37.9%, 지원하지 않음 13.8%. - 58개 사업장 중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사업장(노사협의회로 대체 포함) 41개소의 70.7%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시간 보장.
	- 안산·안양·수원지역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한 설문조사 (응답자 212명) - 조사시기 : 1997년 11~12월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도입(1995) 2년 후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된 경위, 위촉된 소감, 임무와 권한, 현재 활동, 노동조합 및 동료들의 협조 정도, 교육훈련, 활성화 관련 사항 등 49개 사항에 대하여 설문 -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과 임무에 대한 사업장 내의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적극 홍보 필요,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지식과 능력향상을 위한 주기적이고 전문적인 다양한 분야의 체계적 교육, 특히 직종별 특성에 따른 교육 내용과 지역 특성에 따른 교육방법 필요,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동향과 현황을 항상 접하여 관련 업무개발을 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전문지의 정기적 배포 필요, 4) 명예산업안전감독관들 간의 경험 교환을 통한 능력배양을 위하여 지역협의회 구성, 활동의 체계화 및 이를 위한 지원 필요, 5)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을 위한 사업주의 동의 과정에 합리적인 협조 필요.

〈표 1〉의 계속

저자 (연도)	연구 대상	연구 결과 또는 활성화 방안 요약
박태순 (1998)	- 전국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지역협의회 의장 42명 중 전화 확인된 32명에 대한 우편설문조사(응답자 23명) - 조사시기 : 1998년 10월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지역협의회 활성화 관련 사항 요약 : 1) 지역협의회 소집시 개별사업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자유로운 참여보장, 2) 지역협의회 내에 소구역협의회보다는 업종별 분과를 구성·운영하여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유사·유해위험상황에 대한 정보교류 효과 가능, 3) 지역협의회 전체회의를 연간 2회, 그 중 1회는 활동보고와 평가를 위한 회의, 나머지 1회는 업종별 분과로 개최하여 정보교류, 4) 지역협의회 운영에 예산이 없음, 5) 지역협의회 의장단 전국회의를 통하여 정책개발을 위한 의견수렴 필요.
윤조덕 (1999)	- 안산지역 시화·반월공단에 위치한 중소사업장(응답사업장 149개소)의 근로자(377명) 및 사업주(126명) - 조사시기 : 1997년 12월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근로자의 인지도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다고 응답한 근로자(174명) 중 필요하다 81.4%, 필요하지 않다 4.6%, 모르겠다 14.0%로 나타남.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89개소)의 사업주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필요성 여부에 대한 인지도는 필요하다 71.9%, 필요하지 않다 20.2%, 모르겠다 7.9%로 나타남.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의 필요성에 대해 근로자는 사업주에 비해 필요성을 더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박태순 (1999)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지역협의회 의장에게 설문조사(21개 지역협의회로 우편발송, 이 중 13개 응답) - 조사시기 : 1999년 11월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지역협의회 활성화 방안 요약: 1) 지역협의회가 활성화되어야 개별사업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정보교류, 정책개선 건의 및 사업장외 활동도 활성화 가능하게 되므로 노동부 지방청별 전국의장단협의체 제도화 필요, 2) 노동부는 지역협의회 활동에 대한 사업비를 책정하고 그 사업 이행 여부에 따라 사업비 지급 필요, 3) 지역협의회 회의 공간 제공 필요, 4)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노동부 지방사무소와 안전공단 지도원 등의 산업재해예방 유관기관 회의에 각 지역협의회 의장 참석 필요.
최수일 (2002)	- 한국노총 소속 단위노동조합을 대상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에 대한 실태조사(응답노동조합 293개소) - 조사기간 : 2002년 9월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개선을 위한 과제 요약 :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과 관련하여 노동자대표의 추천에 의한 자격 있는 노동자의 위촉을 강제, 2) 사업장내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위촉확대, 3) 작업중지권의 보장과 각종 안전보건 관련 업무에 대한 입회 등 실질적인 역할범위 확대, 5) 지역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 6)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중앙협의회 결성 및 산업별협의회와 분과위원회 구성, 7)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전문성과 활동성 보장을 위한 활동비 지급, 교육의 법정 의무화.

〈표 1〉의 계속

저자 (연도)	연구 대상	연구 결과 또는 활성화 방안 요약 연구결과
이영순 (2002)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업무, 위촉, 수혜, 위촉대상 사업장 등 분석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활성화를 위한 보완 사항 요약 : 1) 업무수행 중 긍지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보완, 안전관리자와의 업무중복 방지, 2) 당해 사업장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 경험 등 기준능력 이상의 보유자 위촉, 3) 보상과 실질적 혜택 수여 및 업무책임 명시, 4) 유해 · 위험사업장에 위촉 의무화, 5) 규모가 큰 사업장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수 증원.
윤조덕 · 한충현 (2005)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설문조사(응답자 사업장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296명, 사업장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32명) - 조사기간: 2005년 4~5월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요약 :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범위를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2)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의 협조의무 명시,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사업장 순회점검 보장, 4) 사업주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개정 · 시정 건의사항 이행의무 명시, 5) 교육시간 보장, 6) 중앙협의회와 지역협의회 구성 · 운영 명시, 7) 사업장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에 관한 법령 및 산업재해예방정책 건의 기능부여, 8) 사업장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사업장 출입보장.
박태순 (2005)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지역협의회 참가실태조사 - 지역협의회, 소구역협의회, 업종협의회 개최 여부, 운영비, 주요 사업, 담당 근로감독관의 의견 등 - 조사시기 : 2005년 6월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지역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대안 요약 : 1) 제도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2) 명예감독관 지역협의회 불참자 관리방안 마련 필요, 3) 명예감독관의 산재예방 관련 지역기관 · 단체회의 참석, 4) 명예감독관 미위촉시 과태료 부과규정, 5) 명예감독관 운영규정(노동부 예규)을 개정하여 중앙협의회 구성 · 운영, 지역협의회 구성, 운영비 등 규정 보완, 6) 사업장 안전보건 관련 점검시 명예감독관 입회 확인 서명.
윤조덕 · 한충현 (2006)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응답자 제조업 428부, 건설업 154부, 사업장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23부) - 조사시기 : 2005년 5~6월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의 보완 · 개정방향 :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의무화, 2) 위촉 범위를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3) 사업장 순회점검 및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지도를 위한 시간과 여건 보장, 4)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개정 · 시정 · 건의사항의 사업주 이행의무화, 5) 교육시간 보장, 6) 업종별로 필요한 교육내용을 전문화 · 세분화, 7) 건설업의 경우 지역노동단체 임 · 직원 등을 사업장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여 건설업 사업장 산재예방활동 참여방안 모색, 8)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실질적 활동보장가이를 위한 사업주의 인식제고 및 정부(노동부)의 노력, 9) 중앙협의회 구성 · 운영.

〈표 1〉의 계속

저자 (연도)	연구 대상	연구 결과 또는 활성화 방안 요약
윤조덕 · 한충현 (2006)	- 윤조덕 · 한충현 (2005)의 실태조사에서 제조업 명예산업안전감독관(215부)만을 별도로 심층분석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활성화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방향 :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위무화 및 위촉범위 확대, 2)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와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의 협력 의무, 3) 사업장 순회점검 보장, 4) 시정 · 건의 사항에 대한 사업주의 이행 의무, 5) 교육 및 이를 위한 시간 보장.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절차, 위촉대상, 업무 및 위촉현황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 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의 2 제1항에 의거하여 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근로자,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 · 직원 중에서 당해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가 추천한 자, 전국 규모의 사업주단체 또는 그 산하 조직에 소속된 임 · 직원 중에서 당해 단체 또는 그 산하 조직이 추천하는 자, 산업재해예방관련 업무를 행하는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 · 직원 중에서 당해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위촉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 2 제1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사업장내 명예감독관 위촉은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사업장으로 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유해 · 위험 사업장[14], 그리고 건설업의 공사금액 150억 원 이상 사업장이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업무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2

14) 유해 · 위험 사업장은 1. 토사석 광업,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조업 제외), 3. 화학물 및 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 의료용화합물, 생약제재제조업, 비누 · 세정광택제 · 화장품제조업 및 화학섬유 제조업 제외), 4.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5. 제1차 금속산업, 6. 조립금속제조업(기계 및 기구 제외), 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5조)

〈표 2〉 2006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자 현황

(단위 : 명, %)

사업장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사업장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직 군									
건설업	제조업	운수업	통신 및 방송	병원	철도 및 지하철	가스 및 전기(전력 · 화력발전소)	광업	기타 업종(서비스업 등)	
775 (21.2)	1,992 (54.4)	367 (10.0)	133 (3.6)	78 (2.1)	66 (1.8)	42 (1.1)	5 (0.1)	205 (5.6)	151
3,663(100.0)									
3,814									

자료 : 국회 제종길 의원(2006. 3. 31)의 자료를 재구성.

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사업장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업무와 사업장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2006년 3월 말 현재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자는 총 3,814명이다. 이 중 사업장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96.0%(3,663명), 사업장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4.0% (151명)이다(표 2 참조). 사업장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직군별로 분류해 보면, 전체 명예산업안전감독관(3,663명) 중 제조업이 54.4%(1,992명)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은 건설업 21.2%(775명)[15], 운수업 10.0%(367명), 기타 업종(서비스업 포함) 5.6%(205명)이다.

사업장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단체별로 분류해 보면, 전체 명예산업안전감독관(151명) 중 노동계(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상급노동조합)가 53.1%(80명)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은 산재예방전문단체(대한산업안전협회, 대한산업보건협회 등) 37.8%(57명), 경영계(상공회의소, 경영자총협회) 6.6%(10명)이다.

15) 건설업 분류기준은 건설현장(위촉자 762명)과 건설업 본사(위촉자 13명)를 합하여 건설업으로 분류하였다.

Ⅲ.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실태조사 분석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현황 파악을 위하여 2006년도에 제조업, 건설업 및 운송업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대상으로 우편설문조사를 행하였다.

2005년도 산재보험 피보험근로자는 총 11,059,193명이며, 이 중 85,411명이 산업재해를 당하였다. 산업재해천인율은 전산업 평균 7.72이며, 제조업은 11.79, 건설업은 7.48, 자동차여객운수업은 7.48, 그리고 화물자동차운수업은 24.66이다. 재해발생 형태는 사업장이 고정되어 있고 주로 옥내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제조업은 협착(33.0%: 35,999명 중 11,871명)이 가장 많고, 주로 옥외에서 일용직에 의한 단기근로 형태로 작업이 이루어지며, 고정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이 많은 건설업은 추락(32.9%: 15,918명 중 5,260명)이 가장 많고, 운행중인 차량이 사업장인 차량운수업은 교통사고(31.3%: 1,777명 중 556명)가 가장 많으며, 그리고 화물을 상·하차한 후 이동을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업은 추락(22.9%: 432명 중 99명)이 가장 많다[16].

이하에서는 지면의 제약으로 인하여 설문조사의 여러 내용 중 노동조합 및 근로자대표 유무에 따른 차이 및 업종별 차이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1. 설문조사 대상, 표집대상, 회수방법 및 설문내용

설문조사 대상은 2006년 3월 말 현재 전국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되어 있는 제조업, 건설업 및 운송업의 전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설문지를 우편발송하여 응답자가 설문에 응답한 후, 설문지를 회송봉투에 넣어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회수하였다.

제조업의 경우, 전국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총 1,992명에게 2006년 5월 15

16) 노동부(2006), 『산업재해현황분석 2005』, p.27, p.30, p.80, p.81, p.86, p.87.

일부터 우편설문을 발송하여 6월 20일까지 설문조사에서 응답한 제조업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총 428명이다(표 3 참조).

건설업의 경우, 전국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총 775명에게 2006년 5월 15일부터 우편설문을 발송하여 6월 20일까지 설문조사에서 응답한 건설업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총 154명이다(표 3 참조).

운송업의 경우, 전국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총 367명 중 철도를 제외한 버스, 택시, 화물(택배, 하역 등)에 종사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총 인원은 355명으로 파악되었다. 이들의 근무처인 사업장에 전화를 걸어 확인한 결과, 택시 150명, 버스 112명, 화물 11명, 총 273개 사업장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근무하

〈표 3〉 지역별 · 업종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설문조사 대상자 수 및 응답자 수

(단위: 명,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전 체		
	위촉자	응답자[1)]	응답률	위촉자	응답자[2)]	응답률	위촉자	응답자[3)]	응답률	위촉자	응답자	응답률
서울 · 강원	122	25	20.5	177	44	24.9	120	44	36.7	419	113	27.0
부산 · 경남	567	135	23.8	171	30	17.5	83	38	45.8	821	203	24.7
대구 · 경북	317	66	20.8	48	13	27.1	47	17	36.2	412	96	23.3
인천 · 경기	453	81	17.9	168	13	7.7	25	12	48.0	646	106	16.4
제주 · 광주 · 전라	244	46	18.8	138	36	26.1	57	25	43.9	439	107	24.4
대전 · 충청	289	75	30.0	73	18	24.7	23	8	34.8	385	101	26.2
전 체	1,992	428	21.5	775	154	19.9	355	1,444	40.6	3,122	725	23.2

주: 국회 제종길 의원실에서 제공한 자료(2006. 3. 31.)를 재구성(연구자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근무지 주소를 보고 지역별 분류)하였음.

1) 제조업 응답자 직책별로는 관리자 116명, 생산직근로자 202명, 사무직근로자 49명, 기타 59명임.

2) 건설업 응답자 직책별로는 본사관리자 5명, 원청관리자 50명, 원청직영반장 60명, 하청관리자 11명, 하청직영반장 12명, 현장근로자 10명, 기타 11명임.

3) 운송업 응답자 직책은 운전기사 32명, 정비사 11명, 관리자(상무, 배차부장, 총무 등) 41명, 노조관계자 63명임.

4) 운송업의 경우, 총 응답자 147명 중 3명이 지역문항에 응답하지 않았음.

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들에게 2006년 10월 16일부터 우편설문을 발송하여 11월 20일까지 회수된 운송업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160명이며, 이 중 분석 가능한 설문은 총 147부이다(표 3 참조).

설문항목은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모두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구성되었다.

- 일반사항 : 성별, 연령, 현 업무 종사기간, 현 업종 종사기간, 현 직책
- 노동조합 · 근로자대표 : 노동조합설립 여부, 근로자대표 선출방식, 근로자대표의 활동
- 산업안전보건 관련 노사협의기구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운영 여부
- 건강검진, 작업환경 측정, 안전교육 : 작업환경 측정 여부, 근로자건강진단 실시 여부,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형태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업무: 위촉경위, 활동기간, 기초소양교육 여부, 전문화교육 여부, 수행하고 있는 업무, 문제점 발견시 처리방법
- 지역협의회, 중앙협의회 : 지역협의회 참가도, 중앙협의회 필요성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방해요인, 활성화 방안 : 방해요인, 활성화 방안
- 기여도, 애로사항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서 기여한 점, 애로사항

2. 사업장내 노동조합 설립 유무 및 근로자대표 유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 2(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대상 등)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사업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노동부 장관에게 추천하고 이를 노동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제4조에 '근로자대표'라 함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장에 노동조합 설립 유무 및 근로자대표 유무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을 위한 추천 과정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된다.

〈표 4〉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사업장내 노동조합 및 근로자대표

(단위: 명, %)

업종	문 항	구 분	빈 도(%)	문 항	구 분	빈 도(%)
제조업	노동조합 유무 (n=420)	없음	151(36.0)	근로자대표 유무 (n=151)	없음	20(13.2)
					있음	131(86.8)
		있음	269(64.0)			
건설업	노동조합 유무 (n=154)	없음	129(83.8)	근로자대표 유무 (n=128)	없음	47(36.7)
					있음	81(63.3)
		있음	25(16.2)			
운송업	노동조합 유무 (n=146)	없음	3(2.1)	근로자대표 유무 (n=3)	없음	0
					있음	3(100.0)
		있음	143(97.9)			

제조업 사업장 노동조합 현황은 응답자(420명) 중 노동조합 있음 64.0%, 노동조합 없음 36.0%로 나타났다.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유무는 응답자(151명) 중 근로자대표 있음 86.8%, 근로자대표 없음 13.2%로 나타났다(표 4 참조). 건설현장 노동조합 현황은 응답자(154명) 중 노동조합 있음 16.2%, 노동조합 없음 83.8%로 나타났다.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유무는 응답자(128명) 중 근로자대표 있음 63.3%, 근로자대표 없음 36.7%로 나타났다(표 4 참조). 운송업 사업장 노동조합 현황은 응답자(146명) 중 노동조합 있음 97.9%, 노동조합 없음 2.1%로 대부분의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유무는 응답자(3명) 중 근로자대표 있음 100.0%로 나타났다(표 4 참조).

이와 같은 조사 결과는 제조업과 건설업의 노동조합대표자 또는 근로자대표가 없는 사업장에서 사업주에 의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구의 참여 형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5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제3

항에 의하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건설업 사업의 일부가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 안전 · 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에서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구의 참여 형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5 참조).

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또는 노사협의회로 대체)의 참여 형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의 참여 형태는 다음과 같다(표 5 참조). 제조업의 경우, 응답자(201명)의 89.1%가 근로자위원, 6.0%가 사용자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하고 있지 못한 경우도 5.0%로 나타났다. 건설업의 경우, 응답자(106명)의 78.3%가 근로자위원, 19.8%가 사용자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하고 있지 못한 경우도 1.9%로 나타났다. 운송업의 경우, 응답자(19명)의 78.9%가 근로자위원, 10.5%가 사용자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하고 있지 못한 경우도 10.5%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사용자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건설업이 19.8%로 제조업(6.0%) 및 운송업(10.5%)보다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노사협의회로 대체(또는 건설업의 경우, 안전 · 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 또는 공정안전보건협의체 또는 기타 협의체로 대체)된 경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참여 형태는 다음과 같다(표 5 참조). 제조업의 경우, 응답자(136명)의 71.3%가 근로자위원, 15.4%가 사용자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하고 있지 못한 경우도 13.2%로 나타났다. 건설업의 경우, 응답자(14명)의 71.4%가 근로자위원, 7.1%이 사용자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하고 있지 못한 경우도 21.4%로 나타났다. 운송업의 경우, 응답자(70명)의 62.9%가 근로자위원, 31.4%가 사용자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하고 있지 못한 경우도 5.7%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노사협의회(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대체된)에 사용자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운송업이 31.4%로 제조업(15.4%) 및 건설업(7.1%)보다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산업안전보건 관련 심의 · 의결기구(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단위 : 명, %)

업종	문항	구 분	빈도 (%)	문항	구 분	빈도 (%)
제조업	산업안전보건 관련 심의 및 의결기구 (n=365)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	211 (57.8)	위원 (n=201)	근로자위원으로 참여	179(89.1)
					사용자위원으로 참여	12(6.0)
					참여하지 못함	10(5.0)
		노사협의회로 대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	143 (39.2)	위원 (n=136)	근로자위원으로 참여	97(71.3)
					사용자위원으로 참여	21(15.4)
					참여하지 못함	18(13.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회 모두 설치 및 운영되고 있지 않음	11 (3.0)	이유 (n=9)	사업주의 반대 또는 무관심	3(33.3)
					노동조합의 무관심	1(11.1)
					해당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2(22.2)
					기타	3(33.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련 심의 및 의결기구 (n=126)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	108 (85.7)	위원 (n=106)	근로자위원으로 참여	83(78.3)
					사용자위원으로 참여	21(19.8)
					참여하지 못함	2(1.9)
		안전 · 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로 대체 설치되어 운영	11 (8.7)	위원 (n=10)	근로자위원으로 참여	7(70.0)
					사용자위원으로 참여	1(10.0)
					참여하지 못함	2(20.0)
		공정안전보건협의체 또는 기타 협의체로 대체 설치되어 운영	4 (3.2)	위원 (n=4)	근로자위원으로 참여	3(75.0)
					사용자위원으로 참여	0
					참여하지 못함	1(25.0)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는 협의기구가 설치 및 운영되고 있지 않음	3 (2.4)	이유 (n=3)	사업주의 반대 또는 무관심	1(33.3)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무관심	0
					해당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1(33.3)
					설치대상이 아니기 때문(공사 금액 120억원 - 토목 150억원 미만)	1(33.3)
운송업	산업안전보건 관련 심의 및 의결기구 (n=117)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	21 (17.9)	위원 (n=19)	근로자위원으로 참여	15(78.9)
					사용자위원으로 참여	2(10.5)
					참여하지 못함	2(10.5)
		노사협의회로 대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	73 (62.4)	위원 (n=70)	근로자위원으로 참여	44(62.9)
					사용자위원으로 참여	22(31.4)
					참여하지 못함	4(5.7)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회 모두 설치 및 운영되고 있지 않음	23 (19.7)	이유 (n=17)	사업주의 반대 또는 무관심	3(17.6)
					노동조합의 무관심	2(11.8)
					해당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9(52.9)
					기타	3(17.6)

이상을 종합하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또는 노사협의회로 대체)에서 사용자측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비율은 운송업 27.0%(89명 중 24명), 건설업 18.3%(120명 중 22명), 제조업 6.8%(337명 중 23명)이며, 그리고 근로자측 위원 또는 사용자측 위원으로 그 어디로도 참여하지 못하는 비율이 제조업 8.3%(337명 중 28명), 운송업 6.7%(89명 중 6명), 건설업 4.2%(120명 중 5명)로 이들 두 경우 모두 제도 운영의 잘못된 경우이다.

나. 노동조합과 근로자대표의 유무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참여 형태

노동조합과 근로자대표 유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근로자측 위원으로 또는 사용자측 위원으로 참여 현황은 다음과 같다(표 6 참조).

제조업의 경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근로자측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노동조합과 근로자대표 모두 없는 경우(Type Ⅰ)는 응답자(12명)의 83.3%, 노동조합은 없지만 근로자대표가 있는 경우(Type Ⅱ)는 응답자(54명)의 83.3%,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Type Ⅲ)는 응답자(129명)의 92.9%로 나타났다.

건설업의 경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근로자측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노동조합과 근로자대표 모두 없는 경우(Type Ⅰ)는 응답자(27명)의 59.3%, 노동조합은 없지만 근로자대표가 있는 경우(Type Ⅱ)는 응답자(64명)의 82.8%,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Type Ⅲ)는 응답자(14명)의 92.9%로 나타났다.

운송업의 경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근로자측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Type Ⅲ)는 응답자(19명)의 78.9%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근로자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율이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Type Ⅲ)에 가장 높으며, 다음은 노동조합은 없으나 근로자대표가 있는 경우(Type Ⅱ)이고, 반면에 노동조합과 근로자대표가 모두 없는 사업장의 경우(Type Ⅰ)는 근로자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업에서 노동조합과 근로자대표가 모두 없는 경우(Type Ⅰ), 33.3%가 사용자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운영의 심한 왜곡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표 6〉 노동조합과 근로자대표 유무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근로자측위원으로 또는 사용자측 위원으로 참여 여부(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단위 : 명, %)

업종	참여 형태	Type Ⅰ	Type Ⅱ	Type Ⅲ	전 체
제조업	근로자측 위원으로 참여	10(83.3)	45(83.3)	119(92.2)	174(89.2)
	사용자측 위원으로 참여	2(16.7)	6(11.1)	4(3.1)	12(6.2)
	참여하지 못하고 있음	0	3(5.6)	6(4.7)	9(4.6)
	전 체	12(100.0)	54(100.0)	129(100.0)	195(100.0)
건설업	근로자측 위원으로 참여	16(59.3)	53(82.8)	13(92.9)	82(78.1)
	사용자측 위원으로 참여	9(33.3)	11(17.2)	1(7.1)	21(20.0)
	참여하지 못하고 있음	2(7.4)	0	0	2(1.9)
	전 체	27(100.0)	64(100.0)	14(100.0)	105(100.0)
운송업	근로자측 위원으로 참여	0	0	15(78.9)	15(78.9)
	사용자측 위원으로 참여	0	0	2(10.5)	2(10.5)
	참여하지 못하고 있음	0	0	2(10.5)	2(10.5)
	전 체	0	0	19(100.0)	19(100.0)

주 : Type Ⅰ : 노동조합과 근로자대표가 모두 없는 경우.
Type Ⅱ: 노동조합은 없지만 근로자대표는 있는 경우.
Type Ⅲ: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4.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업무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45조의 2 제2항에 의거해 사업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는 사업장에서의 업무에 한하며 사업장에서 행하는 자체점검에의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행하는 사업장 감독에의 참여, 사업장 산업재해예방계획 수립에의 참여 및 사업장에서 행하는 기계 · 기구 · 자체검사에의 입회,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지도 등이다.

제조업, 건설업 및 운송업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사업장에서의 업무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업종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업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9개 업무 중 현재 행하고 있는 업무 모두를 체크하게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7 참조).

9개 업무 중 참여 빈도가 가장 높은 업무는 총 응답건수(3,702건) 중 사업장에서 행하는 자체점검에의 참여(15.2%)이다. 이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에서는 총 응답건수(2,316건) 중 사업장에서 행하는 자체점검에의 참여(14.8%)

〈표 7〉 업종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업무(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단위 : 건, %)

문 항	참여 현황				업무 실천율(%)[4]			
	제조업[1]	건설업[2]	운송업[3]	전체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전체
(1) 사업장(건설현장)에서 행하는 자체점검에의 참여	343 (14.8)	125 (15.7)	86 (14.6)	554 (15.0)	83.7	90.6	65.5	81.6
(2) 근로감독관이 행하는 사업(건설현장) 감독에의 참여	236 (10.2)	77 (9.7)	49 (8.3)	362 (9.8)	57.6	55.8	37.4	53.3
(3) 사업장(건설현장) 산업재해예방 계획 수립에의 참여	267 (11.5)	87 (10.9)	73 (12.4)	427 (11.5)	65.1	63.0	55.7	62.9
(4) 사업장(건설현장)에서 행하는 기계·기구 자체검사에의 입회	258 (11.1)	93 (11.7)	57 (9.7)	408 (11.0)	62.9	67.4	43.5	60.0
(5) 법령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167 (7.2)	56 (7.0)	44 (7.5)	267 (7.2)	40.7	40.6	33.6	39.3
(6)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235 (10.1)	95 (11.9)	65 (11.0)	395 (10.7)	57.3	68.8	49.6	58.2
(7) 작업환경측정 또는 근로자 건강진단시의 입회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296 (12.8)	82 (10.3)	72 (12.2)	450 (12.2)	72.2	59.4	55.0	66.3
(8) 직업성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요청	184 (7.9)	56 (7.0)	35 (5.9)	275 (7.4)	44.9	40.6	26.7	40.5
(9)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지도	330 (14.2)	125 (15.7)	109 (18.5)	564 (15.2)	80.5	90.6	83.2	83.1
전 체	2316 (100.0)	796 (100.0)	590 (100.0)	3,702 (100.0)	62.7	64.1	50.0	60.6

주 : 1) 다중응답 응답자 총 410명, 응답자 1인당 평균응답 건수 5.6건.
2) 다중응답 응답자 총 138명, 응답자 1인당 평균응답 건수 5.8건.
3) 다중응답 응답자 총 131명, 응답자 1인당 평균응답 건수 4.5건.
4) 업무실천율=응답건수/총 응답자.

이며, 건설업에서는 총 응답건수(796건) 중 사업장에서 행하는 자체점검에의 참여와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지도(각각 15.7%)이며, 운송업에서는 총 응답건수(590건) 중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지도(18.5%)로 나타났다. 업무실천율의 전체 평균은 60.0%이며, 실천율이 가장 높은 업무는 전체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지도(83.1%)이며,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경우, 사업장에서 행하는 자체점검에의 참여(83.7%), 건설업과 운송업의 경우,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지도(각각 90.6%, 83.2%)로 나타났다.

반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9개 업무 중 참여 빈도가 가장 낮은 하위의 업무는 총 응답건수(3,702건) 중 법령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7.2%)이다(표 7 참조). 이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에서는 총 응답건수(2,316건) 중 법령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7.5%)이며, 건설업에서는 총 응답건수(796건) 중 사업주에 대한 개선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와 직업성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 건강진단 실시 요청(각각 7.0%)이며, 운송업에서는 총 응답건수(590건) 중 직업성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 건강진단 실시 요청(5.9%)으로 나타났다. 실천율이 가장 낮은 업무는 전체적으로 법령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업무실천율 39.3%)이며,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의 경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사업주에 대한 개선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를 가장 꺼리고 있으며(업무실천율 40.7%, 40.6%), 운송업에서는 직업성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 건강진단 실시 요청(업무실천율 26.7%)을 가장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노동조합과 근로자대표의 유무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업무

노동조합과 근로자대표 유무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업무 현황은 다음과 같다(표 8 참조).

제조업에 있어서 노동조합과 근로자대표 모두 없는 경우(Type Ⅰ)에서는 총 응답건수(105건)의 15.2%가 사업장에서 행하는 자체점검에의 참여를 가장 많

은 활동으로, 노동조합은 없지만 근로자대표가 있는 경우(Type Ⅱ)에서는 총 응답건수(743건)의 14.7%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지도를 가장 많은 활동으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Type Ⅲ)에서는 총 응답건수(1434건)의 14.9%가 사업장에서 행하는 자체점검에의 참여가 가장 많은 활동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에 있어서 노동조합과 근로자대표 모두 없는 경우(Type Ⅰ)에서는 총 응답건수(210건)의 각각 18.6%가 각각 사업장에서 행하는 자체점검에의 참여와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지도를 가장 많은 활동으로, 노동조합은 없지만 근로자대표가 있는 경우(Type Ⅱ)에서는 총 응답건수(481건)의 15.0%가 사업장에서 행하는 자체점검에의 참여를 가장 많은 활동으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Type Ⅲ)에서는 총 응답건수(155건)의 15.5%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지도가 가장 많은 활동으로 나타났다.

운송업에 있어서 노동조합은 없지만 근로자대표가 있는 경우(Type Ⅱ)에서는 총 응답건수(12건)의 16.7%가 각각 사업장에서 행하는 자체점검에의 참여와 사업장 산업재해예방계획 수립에의 참여, 그리고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지도를 가장 많은 활동으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Type Ⅲ)에서는 총 응답건수(585건)의 18.5%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지도를 가장 많은 활동으로 나타났다.

노동조합과 근로자대표 유무별 업종별 특성을 보면, 노동조합과 근로자대표 모두 없는 경우(Type 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업무 중 가장 많은 활동은 제조업에서는 사업장에서 행하는 자체점검에의 참여이며, 건설업에서는 사업장에서 행하는 자체점검에의 참여와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지도이다.

노동조합은 없지만 근로자대표가 있는 경우(Type Ⅱ) 가장 많은 활동은 제조업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지도, 건설업에서는 근로감독관이 행하는 사업장(건설현장) 감독에의 참여, 운송업에서는 사업장에서 행하는 자체 점검에의 참여와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지도이다.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Type Ⅲ) 가장 많은 활동은 제조업에서는 사업장에서 행하는 자체점검에의 참여, 건설업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지도, 운송업에서 또한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지도이다.

〈표 8〉 노동조합과 근로자대표 유무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업무(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단위 : 건, %)

	참여 형태	명감 업무(1)	명감 업무(2)	명감 업무(3)	명감 업무(4)	명감 업무(5)	명감 업무(6)	명감 업무(7)	명감 업무(8)	명감 업무(9)	전 체
제조업	Type Ⅰ	16 (15.2)	11 (10.5)	12 (11.4)	14 (13.3)	5 (4.8)	11 (10.5)	13 (12.4)	8 (7.6)	15 (14.3)	105 (100.0)
	Type Ⅱ	108 (14.5)	73 (9.8)	84 (11.3)	96 (12.9)	52 (7.0)	71 (9.6)	95 (12.8)	55 (7.4)	109 (14.7)	743 (100.0)
	Type Ⅲ	213 (14.9)	149 (10.4)	165 (11.5)	145 (10.1)	108 (7.5)	151 (10.5)	183 (12.8)	119 (8.3)	201 (14.0)	1434 (100.0)
	계	337 (14.8)	233 (10.2)	261 (11.4)	255 (11.2)	165 (7.2)	233 (10.2)	291 (12.8)	182 (8.0)	325 (14.2)	2282 (100.0)
건설업	Type Ⅰ	39 (18.6)	17 (8.1)	25 (11.9)	26 (12.4)	9 (4.3)	24 (11.4)	20 (9.5)	11 (5.2)	39 (18.6)	210 (100.0)
	Type Ⅱ	72 (15.0)	46 (9.6)	54 (11.2)	55 (11.4)	40 (8.3)	58 (12.1)	49 (10.2)	37 (7.7)	70 (14.6)	481 (100.0)
	Type Ⅲ	21 (13.5)	18 (11.6)	15 (9.7)	17 (11.0)	11 (7.1)	19 (12.3)	16 (10.3)	14 (9.0)	24 (15.5)	155 (100.0)
	계	132 (15.6)	81 (9.6)	94 (11.1)	98 (11.6)	60 (7.1)	101 (11.9)	85 (10.0)	62 (7.3)	133 (15.7)	846 (100.0)
운송업	Type Ⅰ	0	0	0	0	0	0	0	0	0	0
	Type Ⅱ	2 (16.7)	1 (8.3)	2 (16.7)	1 (8.3)	1 (8.3)	1 (8.3)	1 (8.3)	1 (8.3)	2 (16.7)	12 (100.0)
	Type Ⅲ	86 (14.7)	48 (8.2)	72 (12.3)	56 (9.6)	43 (7.4)	65 (11.1)	73 (12.5)	34 (5.8)	108 (18.5)	585 (100.0)
	계	88 (14.7)	49 (8.2)	74 (12.4)	57 (9.5)	44 (7.4)	66 (11.1)	74 (12.4)	35 (5.9)	110 (18.4)	597 (100.0)

주 : 명감업무(1) : 사업장(건설현장)에서 행하는 자체점검에의 참여, 명감업무(2) : 근로감독관이 행하는 사업장(건설현장) 감독에의 참여, 명감업무(3) : 사업장(건설현장) 산업재해예방계획 수립에의 참여, 명감업무(4) : 사업장(건설현장)에서 행하는 기계·기구 자체 검사에의 입회, 명감업무(5) : 법령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명감업무(6) :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명감업무(7) : 작업환경측정 또는 근로자 건강진단 시의 입회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명감업무(8) : 직업성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 건강진단 실시 요청, 명감업무(9) :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지도, Type Ⅰ : 노동조합과 근로자대표가 모두 없는 경우, TypeⅡ : 노동조합은 없지만 근로자대표는 있는 경우, TypeⅢ :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임. -제조업 : 다중응답 응답자 404명, 응답건수 2,282건, -건설업 : 다중응답 응답자 146명, 응답건수 846건, -운송업 : 다중응답 응답자 132명, 응답건수 597건.

5. 산업안전보건 조직에서의 위원 참여형태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방해요인(1순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또는 역할)는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하여 근로자 대표(또는 근로자)의 참여권에 해당하는 사항이 주된 업무이며, 일부 노동부 근로감독관(안전보건분야)에 관한 보조 업무가 주된 것[17]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산업안전보건조직에서의 참여형태에 따라 활동 방해요인에 대한 견해차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전체적으로 응답자(496명)의 41.3%가 정부의 소극적 제도 운영 및 지원 부족을 가장 큰 방해요인으로 지적하였다. 위원 참여형태별로는 근로자위원의 경우는 응답자(419명)의 43.0%가 정부(노동부)의 소극적 제도운영 및 지원부족을 가장 큰 활동 방해요인으로, 사용자위원의 경우는 응답자(77명)의 33.8%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스스로의 책임감 부족을 가장 큰 활동 방해요인으로 지적하였다(표 9 참조).

업종별 산업안전보건 조직에서의 위원 참여형태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의 가장 큰 방해요인은 다음과 같다(표 9 참조).

제조업에 있어서 근로자위원의 경우는 응답자(270명)의 43.0%가 정부(노동부)의 소극적 제도 운영 및 지원 부족을 가장 큰 활동 방해요인으로, 사용자위원의 경우는 응답자(32명)의 40.6%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감 부족을 가장 큰 활동 방해요인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에 있어서 근로자위원의 경우는 응답자(92명)의 33.7%가 정부(노동부)의 소극적 제도 운영 및 지원 부족을 가장 큰 활동 방해요인으로, 사용자위원의 경우는 응답자(22명)의 36.4%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감 부족을 가장 큰 활동 방해요인으로 나타났다. 운송업에 있어서는 근로자위원(응답자 57명)과 사용자위원(응답자 23명) 모두 정부(노동부)의 소극적 제도 운영 및 지원 부족(각각 57.9%, 43.5%)이 가장 큰 활동 방해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하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의 가장 큰 방해요인으로서,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회 등으로 대체 포함)에서 제조업, 건설업, 운

17) 윤조덕 · 한충현(2005), 『사업장 안전보건과 근로자 참여제도』, pp.66~67.

송업의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와 운송업의 사용자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모두 정부(노동부)의 소극적 제도 운영 및 지원 부족을 지적하였다. 반면에 제조업과 건설업의 사용자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감 부족을 지적하였다.

한편, 산업안전보건 조직에서의 위원별(근로자위원 또는 사용자위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방해요인(1순위)을 카이자승 검증 한 결과, 근로자위원 또는 사용자위원에 따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을 방해하는 요인들에 차이가 있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χ^2=9.622 df=6 p=.141).

〈표 9〉 산업안전보건 조직에서의 위원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방해요인(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단위 : 명,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전 체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소계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소계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소계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전체
A	116 (43.0)	8 (25.0)	124 (41.1)	31 (33.7)	7 (31.8)	38 (33.3)	33 (57.9)	10 (43.5)	43 (53.8)	180 (43.0)	25 (43.5)	205 (41.3)
B	68 (25.2)	13 (40.6)	81 (26.8)	26 (28.3)	8 (36.4)	34 (29.8)	10 (17.5)	5 (21.7)	15 (18.8)	104 (24.8)	26 (33.8)	130 (26.2)
C	18 (6.7)	1 (3.1)	19 (6.3)	5 (5.4)	1 (4.5)	6 (5.3)	3 (5.3)	0	3 (3.8)	26 (6.2)	2 (2.6)	28 (5.6)
D	47 (17.4)	9 (28.1)	56 (18.5)	14 (15.2)	4 (18.2)	18 (15.8)	2 (3.5)	3 (13.0)	5 (6.3)	63 (15.0)	16 (20.8)	79 (15.9)
E	4 (1.5)	0	4 (1.3)	4 (4.3)	0	4 (3.5)	1 (1.8)	0	1 (1.3)	9 (2.1)	0 (0.0)	9 (1.8)
F	17 (6.3)	1 (3.1)	18 (6.0)	12 (13.0)	2 (9.1)	14 (12.3)	2 (3.5)	2 (8.7)	4 (5.0)	31 (7.4)	5 (6.5)	36 (7.3)
G	·	·	·	·	·	·	6 (10.5)	3 (13.0)	9 (11.3)	6 (1.4)	3 (3.9)	9 (1.8)
계	270 (100.0)	32 (100.0)	302 (100.0)	92 (100.0)	22 (100.0)	114 (100.0)	57 (100.0)	23 (100.0)	80 (100.0)	419 (100.0)	77 (100.0)	496 (100.0)

주 : A : 정부(노동부)의 소극적 제도 운영 및 지원 부족, B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감 부족, C : 사업장 관리자의 비협조, D : 사업주의 인식 부족, E : 해고(또는 계약 해지)나 인사 고과 등에서 신분상의 불이익, F : 명예산업안전감독관들의 모임을 통한 정보 교류미흡, G : 근로자의 인식 부족(운송업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설문문항에만 있음)

6.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활성화 방안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업종별 · 노조유무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가. 업종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활성화 방안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활성화 방안들 중 1순위와 2순위를 체크하게 하여 이들을 가중치 없이 합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표 10 참조).

제조업의 경우, 전체 응답건수(833건) 중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시간 및 신분 보장이 26.4%로 가장 많이 제시되었고, 다음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 제고 23.5%, 유관기관인 노동부 지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공단 등과의 연계 강화 15.2% 순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의 경우, 전체 응답건수(290건) 중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시간 및 신분 보장이 23.4%로 가장 많이 제시되었고, 다음은 건설현장에 적합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개선 19.0%,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 제고 17.6% 순으로 나타났다. 운송업의 경우, 전체 응답건수(282건) 중 운송업 특성에 맞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교육(기초소양교육 및 전문화교육)이 22.3%로 가장 많이 제시되었고, 다음은 운송업에 종사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들만의 업종별 협의회 구성 17.0%,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 제고 14.9%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하면, 주로 옥내의 고정 사업장에서 정규직 근로자에 의하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제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사업장 안전보건관리를 지속적 · 체계적으로 할 수 있으며, 타업종에 비해 잘 되어 있어 활동시간 및 신분 보장에 대한 요구가 높고, 반면에 주로 비고정 옥외사업장으로 공사의 형태가 원청 · 하청 및 다수의 사업주 소속 일용직 근로자가 동일 작업장에서 일을 하는 관계로 구성되어 있는 건설업의 경우와 이동하고 있는 차량이 주된 사업장이어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이 제한적이고 집단적으로 한 장소에서 일하고 있지 않는 운송업의 경우, 이들 업종에 적합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및 교육을 가장 우선적인 활성화 방안으로 원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 10〉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 활성화 방안(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단위 : 명, 건, %)

활성화 방안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1순위	2순위	전체[1]	1순위	2순위	전체[2]	1순위	2순위	전체[3]
A	66 (15.7)	27 (6.6)	93 (11.2)	26 (17.6)	7 (4.9)	33 (11.4)	·	·	·
B	45 (10.7)	35 (8.5)	80 (9.6)	8 (5.4)	10 (7.0)	18 (6.2)	23 (16.2)	5 (3.6)	28 (9.9)
C	63 (15.0)	54 (13.1)	117 (14.0)	26 (17.6)	16 (11.3)	42 (14.5)	6 (4.2)	9 (6.4)	15 (5.3)
D	114 (27.1)	82 (19.9)	196 (23.5)	27 (18.2)	24 (16.9)	51 (17.6)	27 (19.0)	15 (10.7)	42 (14.9)
E	50 (11.9)	77 (18.7)	127 (15.2)	9 (6.1)	14 (9.9)	23 (7.9)	5 (3.5)	15 (10.7)	20 (7.1)
F	83 (19.7)	137 (33.3)	220 (26.4)	24 (16.2)	44 (31.0)	68 (23.4)	9 (6.3)	16 (11.4)	25 (8.9)
G	·	·	·	28 (18.9)	27 (19.0)	55 (19.0)	·	·	·
H	·	·	·	·	·	·	25 (17.6)	16 (11.4)	41 (14.5)
I	·	·	·	·	·	·	18 (12.7)	30 (21.4)	48 (17.0)
J	·	·	·	·	·	·	29 (20.4)	34 (24.3)	63 (22.3)
계	421 (100.0)	412 (100.0)	833 (100.0)	148 (100.0)	142 (100.0)	290 (100.0)	142 (100.0)	140 (100.0)	282 (100.0)

주 : 1) 응답자 421명, 응답건수 833건, 2) 응답자 148명, 응답건수 290건, 3) 응답자 142명, 응답건수 282건.

A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대상으로 한 사업주 주도의 사업장(건설현장) 안전교육, B : 노동조합의 안전보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C :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와의 연계 강화, D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 제고, E : 유관기관인 노동부 지방노동청, 한국산업안전공단 등과의 연계 강화(예 : 사업장-건설현장 합동점검), F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시간 및 신분 보장, G : 건설현장에 적합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개선, H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상 및 권한 강화, I : 운송업에 종사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들의 업종별 협의회 구성, J : 운송업 특성에 맞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교육(기초소양교육과 전문화교육)

나. 노동조합과 근로자대표의 유무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활성화 방안(1순위)

김현주 외(2004)의 연구에 의하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에 대한 초점집단(Focus Group)의 면접 결과는 노동조합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한 경우, 그의 활동이 활성화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18].

노동조합과 근로자대표 유무에 따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활성화를 위한 가장 우선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표 11 참조).

제조업에 있어서 노동조합과 근로자대표 모두 없는 경우(Type Ⅰ)에서는 응답자(20명)의 35.0%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 제고를, 노동조합은 없지만 근로자대표가 있는 경우(Type Ⅱ)에서는 응답자(129명)의 34.9%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 제고를,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Type Ⅲ)에서는 응답자(264명)의 26.1%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시간 및 신분 보장을 가장 우선적 사항으로 지적하였다. 건설업에 있어서 노동조합과 근로자대표 모두 없는 경우(Type Ⅰ)에서는 응답자(45명)의 22.2%가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와의 연계 강화를, 노동조합은 없지만 근로자대표가 있는 경우(Type Ⅱ)에서는 응답자(79명)의 17.7%가 각각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와의 연계 강화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시간 및 신분 보장을,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Type Ⅲ)에서는 응답자(23명)의 30.4%가 건설현장에 적합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개선을 가장 우선적 사항으로 지적하였다. 운송업에 있어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Type Ⅲ)에서는 응답자(138명)의 21.0%가 운송업 특성에 맞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교육(기초소양교육&전문화교육)을 가장 우선적 사항으로 지적하였다.

이상을 종합하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활성화를 위한 가장 우선적 사항으로서, 노동조합과 근로자대표 모두 없는 경우(Type Ⅰ) 제조업에서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 제고를, 건설업에서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와의 연계 강화를 지적하였다.

노동조합은 없지만 근로자대표가 있는 경우(Type Ⅱ) 제조업에서는 명예산

18) 김현주 외(2004), 앞의 책, p.129.

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 제고를, 건설업에서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와의 연계 강화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시간 및 신분 보장을 지적하였다.

〈표 11〉 노동조합과 근로자대표 유무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활성화 방안(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단위 : 명, %)

업종	활성화 방안	A	B	C	D	E	F	G	H	I	J	전 체
제조업	Type Ⅰ	3 (15.0)	2 (10.0)	5 (25.0)	7 (35.0)	2 (10.0)	1 (5.0)	·	·	·	·	20 (100.0)
	Type Ⅱ	23 (17.8)	12 (9.3)	28 (21.7)	45 (34.9)	10 (7.8)	11 (8.5)	·	·	·	·	129 (100.0)
	Type Ⅲ	37 (14.0)	30 (11.4)	30 (11.4)	60 (22.7)	38 (14.4)	69 (26.1)	·	·	·	·	264 (100.0)
	전체	63 (15.3)	44 (10.7)	63 (15.3)	112 (27.1)	50 (12.1)	81 (19.6)	·	·	·	·	413 (100.0)
건설업	Type Ⅰ	6 (13.3)	2 (4.4)	10 (22.2)	9 (20.0)	1 (2.2)	8 (17.8)	9 (20.0)	·	·	·	45 (100.0)
	Type Ⅱ	13 (16.5)	6 (7.6)	14 (17.7)	13 (16.5)	7 (8.9)	14 (17.7)	12 (15.2)	·	·	·	79 (100.0)
	Type Ⅲ	6 (26.1)	0	2 (8.7)	5 (21.7)	1 (4.3)	2 (8.7)	7 (30.4)	·	·	·	23 (100.0)
	전체	25 (17.0)	8 (5.4)	26 (17.7)	27 (18.4)	9 (6.1)	24 (16.3)	28 (19.0)	·	·	·	147 (100.0)
운송업	Type Ⅰ	0	0	0	0	0	0	0	0	0	0	0
	Type Ⅱ	0	1 (33.3)	0	2 (66.7)	0	0	0	0	0	0	3 (100.0)
	Type Ⅲ	0	22 (15.9)	6 (4.3)	24 (17.4)	5 (3.6)	9 (6.5)	0	25 (18.1)	18 (13.0)	29 (21.0)	138 (100.0)
	전체	0	23 (16.3)	6 (4.3)	26 (18.4)	5 (3.5)	9 (6.4)	0	25 (17.7)	18 (12.8)	29 (20.6)	141 (100.0)

주 : A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대상으로 한 사업주 주도의 사업장(건설현장) 안전교육, B : 노동조합의 안전보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C :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와의 연계 강화, D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 제고, E : 유관기관인 노동부 지방노동청, 한국산업안전공단등과의 연계 강화(예 : 사업장-건설현장 합동점검), F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시간 및 신분 보장, G : 건설현장에 적합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개선, H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상 및 권한 강화, I : 운송업에 종사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들의 업종별 협의회 구성, J : 운송업 특성에 맞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교육(기초소양교육 & 전문화교육), Type Ⅰ : 노동조합과 근로자대표가 모두 없는 경우, Type Ⅱ: 노동조합은 없지만 근로자대표는 있는 경우, Type Ⅲ: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임.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Type Ⅲ) 제조업에서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시간 및 신분 보장을, 건설업에서는 건설현장에 적합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개선을, 운송업에서는 운송업 특성에 맞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교육(기초소양교육&전문화교육)을 지적하였다.

또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근로자대표만 있는 경우 포함)와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의 두 가지로 대별하여 보며,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는 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 제고 또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와의 관계 개선을 지적하고 있는 반면에,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업종 특성에 적합한 제도 및 교육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사업장 노동조합의 유무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수준에 직 ·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결과로 사료된다.

Ⅳ.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산업재해예방활동에 대한 노 · 사의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가 1995년 7월 처음으로 노동부 행정지침으로 도입되고 이후 1996년 12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시(법률 제5247호) 신설된 제61조의 2(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에 의하여 비로소 법제화되었다.

본 연구는 제도 도입 11년이 지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현황 파악을 통하여 문제점과 취약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2006년도에 제조업, 건설업 및 운송업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나타난 문제점, 취약점과 정책적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실태조사 분석 결과 나타난 문제점 및 취약점

실태조사 분석 결과 주요 문제점과 취약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조합대표자 또는 근로자대표가 없는 사업장에서 사업주에 의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이 이루어지고 있는 정황이 나타났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 2 제1항 제1호의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자"의 규정에 어긋난다.

둘째, 사업장 관리자급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되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사용자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본문 표 5 참조). 예를 들어 제조업의 일부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 생산부장, 관리과장, 공무과장 등의 중간관리자급 이상의 자 및 건설업에서 본사관리자, 원청관리자, 하청관리자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되어 사용자위원으로 참여한 경우로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 2 제1항에 의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하여야 하는 규정에 위반된다.

셋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의 가장 큰 방해요인은 정부(노동부)의 소극적 제도 운영 및 지원 부족으로 조사되었다(본문 표 9 참조). 이는 노동부의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계획(1996년 9월~1999년), 제1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계획(2000~2004년) 및 제2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계획(2005~2009년)에서 반복되어 주요 정책사항 중의 하나로 계획을 세워온 노·사 공동의 산업재해예방활동의 활성화 방안 중의 하나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역할 제고 및 참여 활성화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

넷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활성화를 위한 가장 우선적 사항으로써 제조업의 경우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 제고, 건설업은 건설업 특성에 적합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모델 개발, 그리고 운송업은 운송업 특성에 맞는 교육이 지적되었다.

2. 정책적 시사점

실태조사 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미비점과 취약점을 토대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근로자대표에 의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근로자대표 선출방법을 규정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들로 하여금 근로자대표를 직접 선출하게 하고, 그에 의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추천되도록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과 절차, 그리고 해당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이 필요하다[19]. 이와 같은 선출방법은 한편으로는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권한이나 기능이 강화될 것이 예상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향후 복수노조의 병존 등의 상황하에서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 지명권 행사에 있어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건설현장의 경우 단기근로의 특성을 반영한 근로자대표 선출방법의 구체적 방법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20].

둘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또는 노사협의회 대체 포함 등)에서 사용자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도가 운영되어야 한다[21]. 이를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상급 관리자급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배제가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아울러 사용자측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근로자측 위원으로 위촉을 변경하던가 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새로이 위촉하여 근로자위원으로 활동하도록 노동부의 보다 실제적인 지도 ·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22].

셋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가장 큰 방해요인으로 조사된 정부(노동부)의 소극적 제도 운영 및 지원 부족에 대한 적극적 대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

19) 김훈 · 이승욱(2000)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 관한 법에 의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선출방법과 절차, 그 절차의 하자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하여 그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모법에 규정할 것을 주장하였다(김훈 · 이승욱, 2000, p.21).

20) 강호연(2003)은 여수지역 건설노동자 건강실태 발표 및 제도개선 공청회(2003. 4. 29)에서 건설현장의 현실에 맞는 산업안전보건체계 구축 발제문에서 "건설현장의 경우 단기근로를 반복하기 때문에 현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노동자대표 참여가 구조적으로 배제되어 있다. …… 단기근로의 특성을 반영한 노동자대표의 선임과 활동보장에 대한 문제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강호연, 2003, p.43).

21) 노동부 예규(제444호)「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제5조(위촉 등) 제1항에서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장 소속 명예감독관으로 추천된 자가 영 제2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 위원이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사용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2) 최수일(2002)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개선을 위한 7과제 중의 하나로서 위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였다: "첫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과 관련하여 노동자대표의 추천에 의한 자격있는 노동자의 위촉을 강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보다 충분한 교육과 홍보작업이 정부와 사용자, 노동조합의 측면에서 공동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최수일, 2002, p.38).

한다. 이는 노동부의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계획(1996년 9월~1999년) 중 노사 공동책임하에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 제고 정책[23]과 뒤이은 노동부의 제1차 산업재해예방5개년계획(2000~2004년) 중 사업장 안전관리체제 효율화를 위한 노·사 공동의 산업재해예방활동의 활성화 방안 중의 하나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참여 활성화 정책[24]과 노동부의 제2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계획(2005~2009년) 중 사업장의 자율적인 산재예방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장의 자율적인 산재예방활동 촉진을 위한 방안 중의 하나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운영개선 정책[25]들이 거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가장 큰 방해요인 제거를 위해서는 노동부의 소극적 제도운영 및 지원 부족에 대한 변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지역협의회, 업종별협의회 구성·운영을 통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 및 장소 제공, 그리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의견수렴을 통한 정책건의 기능보완을 위한 중앙협의회 구성 및 자율적 활동을 위한 지원 등.

넷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주의 인식 제고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보장, 그리고 이에 대한 불이익금지 규정(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 2 제2항)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현재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이 '가능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하며 아울러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관련 규정 미이행시 벌칙규정 신설, 자체검사와 작업환경 측정시 단순한 입회와 참여가 아닌 검사 및 측정 결과에 대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서명 의무화 등.

다섯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업종별 특성에 적합한 업종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모델 개발 및 응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본사와 떨어져 있는 옥외사업장과 일용직 근로자가 많은 건설업 특성에 적합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모델, 그리고 항상 이동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버스, 택시, 기타 육상운송의 특성을 반영한 운송업 교육모델 개발 등. 이를 위하여 업종별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현황에 대한 심층 조사연구와 아울러 노·

23) 노동부,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계획 세부실천계획」, 1996, p.405.
24) 노동부, 「제1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계획, 2000」, pp.92~93.
25) 노동부, 「제2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계획, 2005」, p.69.

사 · 정 · 학계의 전문가들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발전위원회(가칭)를 구성 · 운영.

참고문헌

강호연.「건설현장의 현실에 맞는 산업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자」.『여수지역 건설노동자 건강실태 발표 및 제도 개선 공청회(자료집)』.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 노동건강연대 · 여수지역별노동조합 · 민주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 2003. 4. 29, pp.40～46.

국회사무처.「제181회 임시국회 제12차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속기록」. 1996. 12. 26.

김현주 · 곽현석 · 김신범 외.「사업장의 노사참여적 산재예방활동 촉진 방안 연구」. 일반분야 연구보고서 2004-111-608,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5.

김훈 · 이승욱.『노사협의회의 쟁점과 과제』. 연구보고서 2000-03, 한국노동연구원, 2000.

노동부.「제1차 산업재해예방6개년계획(1991-1996)」. 1991.

_____.「산업안전선진화3개년계획 세부시행계획」. 1996. 8.

_____.「제1차 산업재해예방5개년계획(2000-2004)」. 2000. 1.

_____.「제2차 산업재해예방5개년계획(2005-2009)」. 2004.

_____.「산업재해현황분석 2005」. 2006.

박태순.「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지역협의회 활성화 방안」.『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지역협의회 활성화 방안 토론회(자료집)』. 한국노동연구원, 1998, pp. 1～22.

박태순.「제도 도입 10년을 맞이한 지역협의회 운영실태와 그 개선방안」.『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자료집)』. 국회의원 김영주 · 제종길, 주관: 명예감독관지역협의회(안산, 안양, 광주, 대전, 청주, 포항), 2005, pp.1～78.

윤조덕.「산업안전과 노동조합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안산지역 실태조사를 중심으로-」.『IMF하에서의 산업안전과 노동조합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에 관한 토론회(자료집)』. 한국노동연구원 · UNDP(유엔개발계획), 1998. 6. 17, pp.1～74.

윤조덕.「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능력향상과 자유로운 참여보장 방안」,『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활성화 토론회(자료집)』. 한국산업안전공단, 1999. 11. 30, pp.3～52.

윤조덕 · 한충현.「노사참여적 예방활동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역할 제고 및 활성화 방안」.『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자료집)』. 국회의원 김영주 · 제종길, 주관 : 명예감독관지역협의회(안산, 안양, 광주, 대전, 청주, 포항), 2005a, pp.1～78.

윤조덕 · 한충현.『2005 동향조사 심층분석 : 사업장 안전보건과 근로자 참여제도』. 일반분야 보고서 2005-42-333,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5b.

윤조덕 · 한충현.「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개선방향-제조업, 건설업, 사업장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자료집)』.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지역협의회 · 국회의원 제종길, 2006a. pp.1～129.

윤조덕 · 한충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 활성화방안 연구-제조업을 중심으로-"『한국안전학회지』21 (5) (2006b): 92～102.

윤조덕 · 한충현.『2006 동향조사 심층분석 : 기타 비제조업 사업장 안전보건과 근로자 참여제도』. 일반분야 연구자료 2006-70-756,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6c.

이영순.「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 활성화를 위한 주요 개선 방안」.『노동조합 주도의 산재예방활동 활성화를 위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개선정책 토론회(자료집)』.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02, pp.39～52.

최수일.「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의 개선과 노동운동의 정책과제」.『노동조합 주도의 산재예방활동 활성화를 위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 개선정책 토론회(자료집)』.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02, pp.3～38.

abstract

The Current Situation and the Revitalization Plan of the Honorary Industrial Safety Inspector System : Focused on the Manufacturing,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Industries

Jo-Duk Yoon · Choong-Hyun Han

To promote the participation and support of workers in the industrial safety prevention activities, the Honorary Industrial Safety Inspector System was introduced by an instruction of the Ministry of Labor in July, 1995, and was newly inserted in article 61.2 (the Honorary Industrial Safety Inspector System) when amending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in December, 1996.

In order to analyse the problems and weak-points of the Honorary Industrial Safety Inspector System and to suggest it's revitalizing plan, a research was carried out in the field of manufacturing,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industries.

Based on the research analysis, the suggestions can be summarized as the following five items.

First, regulate the election methods of the workers' representative in the case of labor union without the majority of the labors.

Second, prohibit the Honorary Industrial Safety Inspector from participating as the employer member in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Committee.

Third, provide an active policy on the passive and lacking support by the government(the Ministry of Labor), which has been indicated as the biggest obstacle element for the Honorary Industrial Safety Inspector System.

Fourth, promote the better understanding of the employer and specify

the disadvantage ban provision(Article 61.2(2)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on the Honorary Industrial Safety Inspector activities.

Fifth, develop and apply an Honorary Industrial Safety Inspector System models that correspond to the characteristics for each industry category.

Keywords : the honorary industrial safety inspector, labor union, the workers' representativ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committee, obstacle element, revitalization plan.